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람	기 관 의 장

공보

제 845 호 2013. 10. 1(화)

훈 령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95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2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165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회람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인)

2013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9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124명”을 “125명”으로 한다.

별표 공무직의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의 정원표(제7조 관련)

1. 공무직(현업실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의 정원

부서별	총계	현업실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비고 (공무직 전환자)
		계	시설장비 관리	현장공사 작업등 현업	현장지도 단속·감시	일반 사무			
합 계	**118**	**58**	27	5	9	**17**	4	56	**(16)**
기획홍보실									
총 무 과	10	10	5	4		1			
주민참여과									
회 계 과									
문화체육과	7	7	7						
도서관과	7	7	7						
세 무 과	1	1			1				
민원지적과	2	2			1	1			
복지지원과	**5**	**5**				**5**			**(5)**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1	1	1						
환경미화과	57	1			1			56	
안전건설과	6	2	1		1		4		
도시녹지과	2	2	2						
교통행정과	5	5	1		4				(1)
건축주택과	2	2		1	1				
농수산과									
보 건 소	10	10				10			(10)
농소2동	1	1	1						
농소3동	2	2	2						
효문동									

2. 청원경찰의 정원

부 서 별	총 계	경 비 청원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계	그린벨트 단 속	과적차량 단 속	하천감시
합 계	7	1	6	3	2	1
기획홍보실						
총 무 과	1	1				
주민참여과						
회 계 과						
문화체육과 도 서 관 과						
세 무 과						
민원지적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안전건설과	2		2		2	
도시녹지과	2		2	2		
경제교통과						
건축주택과	1		1	1		
농 수 산 과	1		1			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과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른 2014년도 계획인력 증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1)

구 분	당 초			변 경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0% 이상	9% 이내	1% 이내	99% 이상	1% 이내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2)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7.5% 이내	21.5% 이내	30.5% 이내	31.3% 이내	8% 이상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삭 제
비율	13%이내	20%이내	20%이내	47%이상	

○ 별정직공무원

구 분	당 초					변 경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100%	-	-	-	-	100%	-	-	-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3)

o 총 계 : 518명 ⇒ 521명(증 3명)

o 일반직 계 : 474명 ⇒ 519명(증 45명)

- 6급 이하 계 : 439명 ⇒ 484명(증 45명)

o 기능직 계 : 42명 ⇒ 0명(감 42명)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1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기획홍보실장, 전화:052-241-7102, 팩스:052-241-7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획홍보실에 비치하여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18명”을 “521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505명”을 “508명”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100%	-	-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21**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계	**519**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0	18	2	2	8
6급 이하 계	**484**	-			
별정직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 및 별표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1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05명

2. (생략)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0% 이상	9% 이내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생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7.5% 이내	21.5% 이내	30.5% 이내	31.3% 이내	8% 이상

비고(생략)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13% 이내	20% 이내	20% 이내	47% 이상

3. (생략)

</td><td>

제2조(정원의 총수) ---------- 521명--, ---------.

1. ---------- : 508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비고(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

</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18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74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39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능직 계	4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2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19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84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능직 계	0	-			